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7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김주영·강준현·김 현

박상혁 • 박수현 • 박 정

박지원 • 박지혜 • 박홍배

복기왕 · 이수진 · 이학영

임호선 · 전진숙 · 조인철

진성준 · 허성무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므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측이보유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유족 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주장·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노동 자나 그 대리인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가 같이 수급 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제1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제1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 각각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단은 당사자(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29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요구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보험
	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u>"수급권자"로 본다.</u>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2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	
명을 하여야 <u>한다</u> . <u><후단 신</u>	<u>하고, 대통령령으</u>
<u>설></u>	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u>이에 따라야 한다</u> . <u>이 경우 증</u>
	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u>증명</u> 이 불가능하면 그 <u>증명</u> 을	<u>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u>
생략할 수 있다.	<u>증명 또는 자료</u>

④ (생략)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127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 의 제공----.
- ④ (현행과 같음)
-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공단은 당사자(유족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 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 시켜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 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 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12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밀을 누설한 자
-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제129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략)

④ (생 략)

 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한 자

제12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요구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를 따르지 아니한 자
- 4.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